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86호

나. 발 의 자 : 홍국표 의원(찬성자 30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를 폐지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대상 경진대회 개최 근거 신설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정의규정 삭제(안 제2조)

- 나.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특례규정 삭제(안 제10조 삭제)

- 다.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보조금심의 실무
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13조 삭제)

- 라.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 마련(안 제15조)

- 마. 한글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상의 표기 정비(안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관련 조례의 폐지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금융 관련 규정과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경진대회의 근거와 보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됨.

나. 주요 개정사항 검토

(1) 사회적금융 관련 조문의 정비(안 제2조제10호 및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10호)와 고용자금 지원 특례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p> <p>11. (생략)</p> <p>제10조(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 시장은 서울에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도는 별표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 <삭 제></p> <p>11. (현행과 같음) <삭 제></p>

- 서울시는 금융기관의 종합적인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금융기관은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조례에 따른 지원실적도 전무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관리가 어렵고 실적도 없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조치임.

(2)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13조)

- 개정안은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산하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 조례제정 당시에는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7명 내외)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규정을 마련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사업 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중복심사와 관계법령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2017.7.13.)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됨.
- 사문화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후속 입법 조치는 필요하나, 관련 조문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수년간 방치되어 온 바 추후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사항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3)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관련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금융 경진대회의 개최와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② (생 략) ③ <신 설>	제1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조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06년부터 해마다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해왔고, 2022년부터는 서울디지털금융페스티벌로 개편하여 금융정책 행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함.
- 올해 개최되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은 금융감독원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내·외 민간 핀테크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주요 행사로 계획하고 있음.
- 2024년부터는 핀테크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추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